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신용정보업감독규정 (2019/7/10 개정·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증권의 미수발생정보를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집중 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을 집중관리·활용하여 가계부채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(제19조 제2항 제1호)

-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「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·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
 - 신용정보를 등록·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 신용정보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에 삭제
 - 단,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,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삭제

□ 보험계약대출 집중관리·활용(별표 6)

-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·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등록·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적용. 별표 6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분부터 적용